

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/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2. 2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공적 심의를 탈피하고,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있는 표창대상자 선발 등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공적심의기관을 당초 '인사위원회'에서 '공적심사위원회'로 변경
(안 제11조제2항)

과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과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대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포상절차) ① (생 략)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인사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 야 한다.	제11조(포상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공적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.

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4년 2월 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공적심의를 탈피하고,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표창대상자 선발 등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적심의기관을 당초 “인사위원회”에서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변경. (안 제11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 심의를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포상수여 시 형식적인 공적심의를 탈피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표창대상자 선발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의 공적심의회기관을 당초 “인사위원회”에서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사항임.
- 그러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아울러 동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의 위원 위촉이나 위원 구성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